



제297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

---

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**검 토 보 고 서**

2023. 8. 30.

**자치행정위원회**

#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,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기 위하여 「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9조 개정)
  - 존속기한: 2028년 12월 31일까지 (5년)
- 나. 용어 및 문구 정비(안 제3조제1호 및 제1조 개정)
  - 잡종재산 → 일반재산
  - “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→ “제9조제2항에 따라”

## 4. 참고사항

- 가. 참고자료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재산관리과
- 라. 입법예고 : 2023. 7. 20. ~ 2023. 8. 9.(20일간) / 의견없음
- 마. 관계법령 : 첨부
- 바. 비용추계자료 : 첨부

## 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남양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설치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안건으로,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법 제9조제4항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본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「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된 사항이며,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.

붙임 : 1. 23년도 제4차(수시)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결과 1부.

## - 2023년 제4차(수시) -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결과 알림

### 1 심의결과

○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(5건): 원안가결 5

안건	구분	부서	안건명	심의결과	비고
	2개 분야		18건		
1	특별회계 존속기한	재산관리과	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)	원안가결	
2	ㄹ	복지행정과	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)	원안가결	
3	ㄹ	환경정책과	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)	원안가결	
4	ㄹ	주차관리과	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)	원안가결	
5	기금 존속기한	농생명정책과	농업특산품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)	원안가결	

**☑ 「지방재정법」**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동 조례 개정 후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「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존속기한 연장 및 용어·표현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 사항 없음

### 4. 작성자

- 기획조정실 재산관리과장 김주현